

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1. 4. 9 선고 2020가단102719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전 문

원고서울특별시

피고A

변론 종결무변론

판결 선고2021. 4. 9.

주 문

1.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각 11분의 2 지분에 대하여 2016. 11. 2. 체결된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취소한다.
2. 피고는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각 11분의 2 지분에 대하여,
가. 파주시 C, 파주시 D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파주등기소 2016. 11. 2. 접수 제85956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,
나. 파주시 E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파주등기소 2017. 4. 5. 접수 제23078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3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 :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2. 무변론 판결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, 제257조)

판사정연희

별지